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

일부개정법률안

(김민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6945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12. 28.

발의자 : 김민철 · 김경협 · 김철민
김홍걸 · 민형배 · 박영순
변재일 · 송영길 · 양정숙
이광재 · 이용호 · 홍성국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행정업무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해서는 국방 · 치안 · 환경 · 안전 · 측량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아 그 활용을 촉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상 드론을 활용하여 항공촬영을 하려면 드론 비행 승인과 별개로 사전에 국방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방부와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서 드론 항공촬영을 촉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국방부 ·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, 공공단체들 상호간에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드론 항공촬영의 허가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이고, 협력체계 내

용을 위반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(안 제7조의2 및 제27조 신설).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드론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) ①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의 승인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

②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7조(과태료) ① 제7조의2제1항의 상호협력 체계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촬영을 한 드론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·징수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7조의2(드론촬영을 위한 협력 체계의 구축 및 운영)</u> ①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의 승인절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, 국토교통부 등 관계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양자간 또는 다자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.</p> <p>② 드론을 활용한 항공촬영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p>
<u><신 설></u>	<p><u>제27조(과태료) ① 제7조의2제1항의 상호협력 체계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항공촬영을 한 드론 사용사업자나 드론조종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한 기관의 장</p>

<u>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</u>
<u>따라 부과·징수한다.</u>